

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출연금
2.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
제 3 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시가스시설 신규설치비에 대한 용자지원과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사용한다.

1. 사용시설자금: 기존주택(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포함한다) 또는 신축하는 단독주택의 사용시설 설치비
2.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설치비

제 4 조(기금의 운용관리) ①기금은 구청장이 운용 관리하며, 도시가스 사업기금 계좌를 별도 설치한다.

②구청장은 기금을 시중은행(이하 "은행"이라 한다)에 위탁하여 관리한다.

제 5 조(용자대상자) 기금의 용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사용시설자금: 수용가
2. 공급시설자금: 일반도시가스사업자

제 6 조(용자범위) 이 기금에서 용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사용시설자금: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설비의 50% 이내
2. 공급시설자금: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설비의 70% 이내

제 7 조(이자율등) 용자금에 대한 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사용시설자금: 년리 8%(3년 균등분할상환)
2. 공급시설자금: 년리 8%(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)

제 8 조(용자신청절차등)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대상자가 기금을 용자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기금용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구청장은 다음사항을 확인하여 기금의 용자지급여부를 용자대상자에게 통보 및 기금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은행에 용자토록 추천하여야 한다.

1. 사업내용의 적정여부
2. 금액산정의 적정여부등

③기금의 용자지급 통지를 받은 용자대상자는 그 공사가 완료된 후 가스시설 안전 검사를 필한 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은행에 용자금을 요청한다.

제 9 조(지방재정법등의 준용) 은행에 대한 감사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관련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금고"는 "은행"으로 본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시행기간)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가스보급율이 70% 달성 시까지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 본문중 "폐기물관리법 제35조제1항"을 "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제1항"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중 "폐기물관리법 제35조제2항"을 "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제2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 (안)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건 및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건 및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…… 오수·분뇨및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제1항 ……	제1조(목적) …… 오수·분뇨및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제1항 ……
제6조(가축사육에 대한 감독)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은자가 제5조에 의한 사육사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	제6조(가축사육에 대한 감독)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은자가 제5조에 의한 사육사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	제6조(가축사육에 대한 감독) ①현행과 같음.	제6조(가축사육에 대한 감독) ①현행과 같음.
②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조치함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허가취소 및 폐기물관리법 제35조제2항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	②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조치함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허가취소 및 폐기물관리법 제35조제2항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	②……………	②……………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제2항……………

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장 총칙

제1절 총칙

제1조(과세의 근거) 구세의 세목, 과세개체, 과세표준, 세율 기타 부과 징수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.
 1. 세무공무원: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.
 2. 납세고지서: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구세

에 대하여 그 부과와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의 주소, 성명, 과세표준액, 세율, 세액, 납기, 납부장소와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와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구청장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.

제3조(세목) ①구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.

②보통세는 다음과 같다.

1. 면허세
2. 재산세
3. 종합토지세

③목적세는 다음과 같다.

1. 사업소세